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7 선고 2020가단53028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
담당변호사 여봉열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1. 9. 9.
판 결 선 고 2021. 10. 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1. 3. 체결된 신탁계약을 48,416,3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8,416,3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보전채권의 발생

가. 인정사실

원고는 주방기기 및 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계획하는 공유주방¹⁾ 사업에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공유주방에 들어가는 3천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 공급 및 설치 용역을 피고로부터 발주받기로 하고, 2019. 5. 14. 피고의 처인 C과 사이에서, 위 각 돈을 합친 6600만 원을 C의 차용금으로 하여 C이 1차로 2019. 5. 22.까지 1280만 원, 2차로 같은 해 6. 30.까지 3천만 원, 3차로 같은 해 8. 20.까지 2320만 원을 각 나누어 갚되, 이를 1회라도 어길 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을 한 다음, 같은 날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만 원을 이체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제1 내지 6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C이 2019. 5. 22.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1차 1280만 원의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,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3600만 원²⁾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9. 5. 2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3천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피고의 공유주방에 공급 및 설치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C이 그 대금 3천만 원과 기지급받은 위 3600만 원을 합쳐 6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, 원고가 주방기기를 공급 및 설치하여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많은 손해를 보았으므로 C으로서 3600만 원의 지급의무마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C의 3600만 원에 대한 변제 책임 유무나 변제하여야 할 시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방기기 공급 및 설치의무의 이행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사해행위의 성립

가. 인정사실

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1. 3. 남편인 피고와 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을 넘겼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

나. 판단

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는바,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3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로서의 가액배상

가. 인정사실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. 한편,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2020. 11. 3. 및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가 13억 원 상당이고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392,600,000원이었다.

[인정근거] 갑제2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- 1)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
- 2) 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,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,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,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

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는바(대법원 96다23207 판결 참조), 피고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.

3) 가액배상의 범위를 보건대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은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채권액인바, 이를 계산하면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. 5. 23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. 9. 9.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2,416,301원[①2019. 5. 23. ~ 2021. 5. 22. 2년간 : 3600만 원 $\times 0.15 \times 2 = 10,800,000$ 원 + ②2021. 5. 23. ~ 2021. 8. 22. 3개월간 : 3600만 원 $\times 0.15 \times 3 / 12 = 1,350,000$ 원 + ③2021. 8. 23. ~ 2021. 9. 9. 18일간 : 3600만 원 $\times 0.15 \times 18 / 365 = 266,301$ 원]을 합친 48,416,301원이다.

4. 결론

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 채권액 48,416,301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홍도

별지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종로구 [] [] 동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종로구 []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평지붕 12층 공동주택(아파트)

지3층 130.91㎡

지2층 117.73㎡

지1층 281.57㎡

1층 628.69㎡

2층 628.69㎡

3층 628.69㎡

4층 628.69㎡

5층 628.69㎡

6층 628.69㎡

7층 628.69㎡

8층 628.69㎡

9층 628.69㎡

10층 628.69㎡

11층 416.13㎡

12층 416.13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종로구 [] 대 22375.5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9층 []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4.67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22375.5분의 76.7957. 끝.

1) 공유주방(shared kitchen) 은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온 사업모델이다.

2) 3천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 공급 및 설치 용역은 실행되지 않았다.